

학·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

(제정 2004. 5. 20.)

(전부개정 2015. 11. 24.)

(제명변경 2023. 3. 29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전주대학교 학칙」 제28조제4항 및 「대학원 학칙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학·석사 연계과정(이하 “연계과정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3.29., 2024.3.1.>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2조(모집단위)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 전 학과로 한다. <개정 2021.3.4., 2023.3.29.>

② 삭 제 <2019.3.28.>

제3조(지원자격 및 신청) ① 연계과정의 지원자격은 학사과정 4학기 이상(65학점 이상)을 수료한 자로 해당 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균평점이 3.0 이상이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 <개정 2017.12.20.>

② 대학원 지원학과는 학부과정의 학과(주전공, 부전공, 복수전공, 융합전공, 연계전공)와 관련된 학과에 한하며, 복수로 지원할 수 없다. <신설 2023.3.29.>

③ 건축학과 및 사범대학은 제외한다. <개정 2023.3.29.>

④ 신청 시기는 5차 학기부터 7차 학기까지로 하며, 연계과정 지원서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한다. <개정 2018.6.6., 2023.3.29.>

제4조(제출서류) 연계과정 지원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·석사 연계과정 지원서[별지 제1호] 1부
2. 서약서[별지 제2호] 1부
3. 연구계획서[별지 제3호] 1부
4. 자기소개서[별지 제4호] 1부
5. 성적증명서 1부

제5조(전형방법) ① 전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면접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서류전형은 학부성적, 연구계획서, 지도교수 추천서 및 각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

③ 연계과정 이수 예정자는 매학기 1회 선발한다. <신설 2018.6.6>

제6조(수업연한) ① 연계과정의 최소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며,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6.6.>

1. 학사학위과정 : 7개 학기 <개정 2018.6.6.>
2. 석사학위과정 : 3개 학기 <개정 2018.6.6.>

②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없다.

제7조(등록 및 취소)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부 졸업 시까지 학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대학원 진학 시 해당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6.6.>

②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.

- ③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는 4학기 정규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포기한 자,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,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학부 졸업이 인정되지 않고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, 학사학위 졸업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⑤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 후 학부과정부터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까지 군입대 및 신병 외의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.

제8조(이수학점)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매학기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학부 졸업 시까지 해당 대학원 전공과목을 6학점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원과목 수강신청학점은 학사과정의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6.6.>

② 학사과정에서 사전에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은 학부과정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, 해당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B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석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9조(졸업요건) 연계과정의 졸업요건은 「전주대학교 학칙」 과 「대학원 학칙」 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3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명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]

학·석사 연계과정 지원서

지원학과 :		전 공 :			
대 학		학 부(과)		전공	
학 번		성 명		핸드폰	
총 이수학점		총 평점평균	/ 4.5	E-mail	
주 소	(TEL :)				

◆ 지도교수 추천서

추천교수 : (인)

본인은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학·석사 연계과정에 지원합니다.

- 붙 임 : 1. 서약서 1부.
 2. 연구계획서 1부.
 3. 자기소개서 1부.
 4. 성적증명서 1부. 끝.

20 . .

지 원 자 : (인)

[별지 제3호]

연구 계획서

(학·석사 연계과정 지원자)

지원학과 :

전공:

성명 :

지원자 :

(인)

[별지 제4호]

자 기 소 개 서

(학·석사 연계과정 지원자)

지원학과 :

전공:

성명 :

지원자 :

(인)

